

| | |
|------|-----------|
| 문서번호 | 주택과-18212 |
| 결재일자 | 2016.6.2. |
| 공개여부 | 부분공개 |

| | | | |
|-----|--------|------|--------------|
| 주무관 | 주택사업팀장 | 주택과장 | 도시관리국장 |
| 김도영 | 최용영 | 양두승 | 06/02 이기배 |
| 협 조 | | | |

“ 중앙연립 주택재건축사업 ”
감정평가업자 선정위원회 개최



도 시 관 리 국
(주 택 과)

중앙연립 주택재건축사업

감정평가업자 선정위원회 개최

중앙연립 재건축정비사업의 관리처분계획 수립을 위한 감정평가업자 선정 요청이 있어 서울시 감정평가업자 선정 기준에 따라 「감정평가업자 선정위원회」를 개최하여 **감정평가계획의 적정성**을 평가하고자 함

I

관련근거

- 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」 제48조(관리처분계획인가 등, '14.5.21.)
- 「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」 제26조의2(감정평가업자의 선정기준 등, '16.3.24.)
- 서울특별시 감정평가업자 선정 평가 세부기준 (서울시 재생협력과-6192호, '16.5.4.)
- 광진구 감정평가업자 선정 운영(안) (구청장 방침 - 607호, '16.5.18.)

II

사업개요

■ 위치 및 규모

- 위 치 : 아차산로25길 60, 중앙연립(화양동 35-4)
- 사업주체 : 중앙연립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(조합원 28명)
- 규모용도 : 지하1층/지상7층 아파트 1개동 54세대
- 구역면적 : 2,508 m^2
- 용 적 률 : 197.58%(연면적 : 4,942.11 m^2)

■ 추진 경위

- 2016. 4. 12. : 사업시행인가 고시(광진구 고시 제2016-38호)
- 2016. 4. 12. : 감정평가업자 선정 의뢰(조합→구)
- 2016. 5. 18. : 광진구 '감정평가업자 선정운영' 방침 수립
- 2016. 5. 19. : 감정평가수수료 예치(조합→구)
- 2016. 5. 19. : 감정평가업자 선정 공고(7일)

III

참여 업체

■ 참여 감정평가사 근무지(본사 및 지사포함)가 **서울시인** 8개 감정평가법인 입찰

| 연번 | 법인명 | 대표자 |
|----|-----------------|-----|
| 1 | (주)감정평가법인 대일감정원 | 김재철 |
| 2 | (주)에이원감정평가법인 | 김도현 |
| 3 | 동인감정평가법인(주) | 공민달 |
| 4 | (주)한국씨티감정평가법인 | 정 훈 |
| 5 | (주)세아감정평가법인 | 김남중 |
| 6 | (주)감정평가법인 세종 | 장영태 |
| 7 | 한국감정원 서울동부지사 | 박기석 |
| 8 | (주)경일감정평가법인 | 이청용 |

IV

심사개요

■ 심 사 일 : 2016. 6. 7.(화)

■ 심사방법 : 서면심사(위원별로 방문, 심사자료 설명 및 평가자료 회수)

■ 평가자료 : 감정평가 수행계획 제안서, 위원회 심사기준표[붙임2]

■ 심사내용 : **감정평가계획의 적정성(비계량)**

- 업무추진계획(25%)
- 인력투입계획(25%)
- 사후서비스 제안정도(50%)

■ 심사대상 : 입찰에 참여한 8개 감정평가법인

☞ 평가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위해 **법인명은 제안서에서 삭제 조치**

■ 감정평가업자 선정위원회 구성

- 설치근거 : 서울특별시 감정평가업자 선정 평가 세부기준
- 유의사항 : 평가항목별 최고 및 최저점을 준 위원의 점수를 제외

| 연번 | 구분 | 성명(성별) | 소속 및 직위 |
|----|-----|--------|------------------|
| 1 | 위원장 | 이기배(남) | 광진구 도시관리국장 |
| 2 | 당연직 | 양두승(남) | 광진구 주택과장 |
| 3 | 위원 | 권자영(여) | 중앙감정평가법인 감정평가사 |
| 4 | " | 신종철(남) | 건국대학교 부동산학과교수 |
| 5 | " | 이영희(여) | 늘봄공인중개사사무소 공인중개사 |
| 6 | " | 곽세근(남) | 대한감정평가법인 감정평가사 |

☞ 조합에서 추천하는 1인은 참여하지 않을 예정

V

행정사항

■ 「감정평가업자 선정위원회」 외부위원 수당 지급

- 지급액 : 금280,000원(70,000원/인 × 4인 = 280,000원)
- 예산과목 : 재건축 및 주택건설공사장 안전관리, 일반운영비, 사무관리비

붙임 : 1. 감정평가업자 선정위원회 명단 1부.
2. 심사기준표 양식 1부. 끝.